

#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6. 3.

## 1. 제안이유

최근 물가 상승과 외식비 인상 등으로 급식비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급식비 기준단가에 연동하도록 개정함으로써, 급식비 기준의 현실화와 향후 물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항목 중 급식비 지급기준을 현행 “8,000원 이내” 에서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2의2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” 로 변경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항목 중 급식비 지급기준을 현행 정액 기준에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으로 변경하여, 급식비 기준의 현실화와 물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임.
- 특히, 급식비 기준을 상위 기준에 연동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향후 급식단가 변동 시 조례 개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줄이고, 지급기준의 객관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